

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02. 11.
제출자 : 이천시장

□ 개정이유

-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하여, 사용기간 만료 후 시장의 검사를 필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편의적 규정을 시민 편의 위주로 정비하고, 조례 시행 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코자 함

□ 주요골자

- 복지관 사용허가의 제한 규정 중 일부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정을 통폐합
“건물 또는 그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때”의 경우는 “복지관의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삭제함. (안 제5조)
-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여 사용기간 만료 후 시장의 검사를 필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편의적 규정을, 시장의 필요에 의한 사후점검실시 규정으로 정비하여 사용자의 신고의무 부담을 완화하고, 시설의 변경 등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미비한 규정을 보완함(안 제10조, 제11조)

이천시조례 제 호

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이천시복지관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제5조(사용허가의 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
2. 기타 복지회관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검사) ①시장은 사용자가 복지관의 사용을 마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등의 이상유무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시설의 변경등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사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.

제11조제목 “원상복구”를 “손해배상”으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파·소		사회복지과
임 안 자	실·파·소장 직위·성명	사회복지과장 서 광 자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가정복지담당 박 형 숙
	담당자 성명·전화	김 종 광 (644-2217)

신.구조문 대비표

제5조(사용금지)	제5조(사용허가의 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.
<p>1.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</p> <p>2. 건물 또는 그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</p> <p>3. 복지관의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기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</p>	<p>제5조(사용허가의 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.</p> <p>1.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</p> <p>2. 기타 복지관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</p> <p>3. (삭 제)</p>
제10조(검사) 사용자는 복지관을 사용한 후에는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 건물 기타 시설물의 이상 유무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.	<p>제10조(검사) ① 시장은 사용자가 복지관의 사용을 마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등의 이상유무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시설의 변경등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사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.</p>
제11조(원상복구)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	제11조(손해배상)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